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 일정 자산 이하 고령층 대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주택담보 대출 이자부담의 주택연금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주요 제·개정 내용

-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주택가격 2억원 미만 → 2.5억원으로 상향,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 50% 이내로 확대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대상자가 우대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위한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우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차장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4
- 팩스번호 : 0505-036-0766

첨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각 1부. 끝.

첨부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8. (생 략) 9. “대출한도”는 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가격 2억원을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을 따라 계산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u><신 설></u> <u><신 설></u> 9. ~ 22. (생 략)	제1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8. (현행과 같음) 9. “대출한도”는 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 제도(우대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함)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 주택가격 2.5억원을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에 따라 계산한 대출한도 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우대지원을 받은 경우) : 주택가격 2.5억원을 기준으로 우대지원 없이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계산한 대출한도 9. ~ 22. (현행과 같음)	우대형 주택가격 기준 상향 및 대출상환 방식 (우대지원) 대출한도 제한 설명 추가
<u><신 설></u>	<u>부칙(2)</u>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6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시행일 이후 보증신청접수 건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2절 보증대상	제1장 총칙 제2절 보증대상	
제7조(보증제한) ① 보증신청일(배우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1]“보증승인 등 전결사항표“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u>사람</u>. 다만, 개별인출금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생략) ② (생략)	제7조(보증제한) ① 보증신청일(배우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보증조건변경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1]“보증승인 등 전결사항표“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보증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u>사람(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u>. 다만, 개별인출금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보증제한 대상 명확화
제2장 보증절차 제3절 보증약정 및 실행	제2장 보증절차 제3절 보증약정 및 실행	
제32조(보증서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보증서를 발급한다. 1. ~ 2. (생략) 3. <u>피보증인</u>의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② (생략)	제32조(보증서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보증서를 발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피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u>의 신용관리정보 보유 여부 ② (현행과 같음)	보증서 발급시 확인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장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 및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의 특례 제1절 공통사항	제6장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 및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의 특례 제1절 공통사항	
제6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을 위하여 제15조의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제68조제 1항의 <u>대출상환방식</u> 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제6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을 위하여 제15조의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제68조제 1항의 <u>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u> 으로 연금을 지급 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우대형 대출상환 방식 정의 추가
제2절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에 대한 특례	제2절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에 대한 특례	
제68조(지급방식 등 특례) <u>① 연금대출의 지급방식은 인출 한도는 일시에 지급받고, 잔여대출 한도에 대하여 피보증인(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이하 “대출상환방식”이라 한다) 이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68조(지급방식 등 특례) <u>① 연금대출의 지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인출한도는 일시에 지급받고, 잔여대출한도에 대하여 피보증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동일한 월지급금을 지 급받는 방식(이하 “대출상환방식” 이라 한다) 2. 대출상환방식 중 제70조제1항 제2호와 제71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72조의 우대지원금을 반영 하여 계산된 제14조의 월지급금	기존 제1항을 제1호로 내림 우대형 해당자 월지급금 등 우대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신 설></u> ② (생 략) ③ (생 략)	<u>등을 지급받는 방식(이하 “대출상환우대방식”이라 한다)</u> ② <u>대출상환우대방식의 대출한도는 제71조의 우대기준주택가격에 대한 대출상환방식의 대출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우대형에 준하여 대출한도 제한 조문번호 변경
<u><신 설></u>	<u>제69조의2(보유주택수 관리 및 지급 조정) ① 대출상환우대방식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u> <u>② 보유주택수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u>	우대형과 동일하게 추가주택 구입 제한
제3절 우대형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특례	제3절 우대형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특례	
제71조(담보주택 및 보유주택수의 특례) ① 가입대상주택은 주택가격 <u>2억원</u>(이하 “우대기준주택가격”이라 한다)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② (생 략)	제71조(담보주택 및 보유주택수의 특례) ① 가입대상주택은 주택가격 <u>2.5억원</u>(이하 “우대기준주택가격”이라 한다)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우대형 주택가격 기준 상향
제73조(지급방식 등의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u>45%</u>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73조(지급방식 등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u>50%</u>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우대형 인출한도 확대
<u><신 설></u>	<u>부칙(5)</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증신청접수 건부터 적용한다.</u>	

첨부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2절 보증대상 2. 담보주택 요건의 확인방법 (위임 규정: 제5조제2항, 관련규정: 제5조제1항, 제2조제2호 및 제7호) 가. 담보주택 요건 확인 시에는 규정 제2조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1) ~ (3) (생략) (4)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이하 같다)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u><단서 신설></u> (나) ~ (다) (생략) 나. (생략)	제1장 총칙 제2절 보증대상 2. 담보주택 요건의 확인방법 (위임 규정: 제5조제2항, 관련규정: 제5조제1항, 제2조제2호 및 제7호) 가. 담보주택 요건 확인 시에는 규정 제2조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이하 같다)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으로 본다. <u>다만,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계산 시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부분 중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주택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u> (나) ~ (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복합용도주택의 주택면적 비중 계산방식 개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장 보증절차 제1절 보증상담 및 신청 2. 설명의무 이행 (위임규정: 제22조제3항, 관련규정: 제22조) 가. ~ 사. (생략) 아. 비대면 보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채널(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사전설명영상을 제공하고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등을 열람하게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에 <u>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포함)를 이용한</u>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채널을 통해 보증승인 내용이 반영된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에 전자서명을 받는다. 자. (생략)	제2장 보증절차 제1절 보증상담 및 신청 2. 설명의무 이행 (위임규정: 제22조제3항, 관련규정: 제22조)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비대면 보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채널(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사전설명영상을 제공하고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등을 열람하게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에 <u>「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u>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채널을 통해 보증승인 내용이 반영된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에 전자서명을 받는다. 자. (현행과 같음)	비대면 신청채널 인증방법 개선에 따른 전자서명 방식 확대
4. 보증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유의사항 (위임규정: 제23조제4항, 관련규정: 제23조제1항) 가. ~ 다. (생략) 라. 주민등록등본 등 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해당 시·군·구청·등기소 등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뿐만 아니라 인터넷 열람·발급분도 제출 가능하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 직원이 인터넷 또는 <u>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등을</u> 통하여 열	4. 보증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유의사항 (위임규정: 제23조제4항, 관련규정: 제23조제1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민등록등본 등 보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해당 시·군·구청·등기소 등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뿐만 아니라 인터넷 열람·발급분도 제출 가능하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 직원이 인터넷 또는 <u>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공공 마이데이터</u>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람·확인하거나 스크래핑(“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징구)을 이용하여 발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마. ~ 차. (생략)	<u>서비스(“주택금융상품 이용 동의서” 징구) 등을</u> 통하여 람·확인하거나 스크래핑(“스크래핑(서류 제출 자동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징구)을 이용하여 발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마. ~ 차. (현행과 같음)	
제2절 보증심사 및 승인	제2절 보증심사 및 승인	
7. 보증심사 (위임규정: 제27조제2항) 가. ~ 나. (생략) <u><신설></u> <u>다.</u> (생략)	7. 보증심사 (위임규정: 제27조제2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등을 확인한다.</u> <u>라.</u> (현행 다.와 같음)	신용관리정보 조회대상 명확화
제6장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 및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의 특례 제2절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에 대한 특례	제6장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 및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의 특례 제2절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제도에 대한 특례	
1. 선순위채권 (위임규정: 제68조 <u>제3항</u> , 관련규정: 제68조 <u>제2항</u>)	1. 선순위채권 (위임규정: 제68조 <u>제4항</u> , 관련규정: 제68조 <u>제3항</u>)	조문번호 변경
3. 선순위채권 상환처리방법 (위임규정: 제68조 <u>제3항</u>) <u>대출상환방식</u> 에 의한 선순위채권 상환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선순위채권 상환처리방법 (위임규정: 제68조 <u>제4항</u>) <u>대출상환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u> 에 의한 선순위채권 상환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출상환 우대방식 추가
4. 월지급금 지급유형 (위임규정: 제68조 <u>제3항</u>)	4. 월지급금 지급유형 (위임규정: 제68조 <u>제4항</u>)	조문번호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u><신설></u>	5. 보유주택수 관리 및 지급조정 (관련규정: 제68조의2) 가. 보유주택수 관리는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 제도의 피보증인(대출상환우대 방식에 한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보유주택수 관리의 실시 방법은 ‘제6장제3절3.가’부터 ‘라.’까지를 준용한다. 다. 담보주택 외의 주택 보유에 따른 지급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6장제3절4.’를 준용한다.	우대형에 준하여 추가주택 구매 제한
제3절 우대형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특례	제3절 우대형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특례	
1. 우대형 전환 (위임규정: 제70조 제4항) 가. 우대형 전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4) 전환 신청일 현재 인출한도설정금액이 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u>45%</u> 이내인 경우	1. 우대형 전환 (위임규정: 제70조 제4항) 가. 우대형 전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전환 신청일 현재 인출한도설정금액이 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u>50%</u> 이내인 경우	우대형 인출한도 확대
<u><신설></u>	부칙[10] 1. 시행일 <u>이 기준은 2024년 6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2. 적용례 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보증신청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제2장제	기 신청건에도 전자서명방식 확대 적용

현행	개정안	비고								
	<u>1절2.아.’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보증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u>									
[별표1] 신규보증 시 초기보증료 계산방법 <table><tr><th>구분</th><th>초기보증료 계산방법</th></tr><tr><td>신규보증시</td><td>$\text{담보주택가격}^{\text{주1)}} \times 1.5\%^{\text{주2)}} \times \text{Min} \left(1, \frac{6\text{억원}}{\text{총대출한도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text{주3)}}} \right)^{\text{주4)}}$</td></tr></table> 주1) (생략) 주2) 규정 제68조제1항의 <u>대출상환방식</u>을 선택한 경우에는 1.0%로 적용 주3) ~ 주4) (생략)	구분	초기보증료 계산방법	신규보증시	$\text{담보주택가격}^{\text{주1)}} \times 1.5\%^{\text{주2)}} \times \text{Min} \left(1, \frac{6\text{억원}}{\text{총대출한도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text{주3)}}} \right)^{\text{주4)}}$	[별표1] 신규보증 시 초기보증료 계산방법 <table><tr><th>구분</th><th>초기보증료 계산방법</th></tr><tr><td>신규보증시</td><td>$\text{담보주택가격}^{\text{주1)}} \times 1.5\%^{\text{주2)}} \times \text{Min} \left(1, \frac{6\text{억원}}{\text{총대출한도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text{주3)}}} \right)^{\text{주4)}}$</td></tr></table> 주1) (현행과 같음) 주2) 규정 제68조제1항의 <u>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을 포함한다)</u>을 선택한 경우에는 1.0%로 적용 주3) ~ 주4) (현행과 같음)	구분	초기보증료 계산방법	신규보증시	$\text{담보주택가격}^{\text{주1)}} \times 1.5\%^{\text{주2)}} \times \text{Min} \left(1, \frac{6\text{억원}}{\text{총대출한도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text{주3)}}} \right)^{\text{주4)}}$	대출상환우대방식 추가
구분	초기보증료 계산방법									
신규보증시	$\text{담보주택가격}^{\text{주1)}} \times 1.5\%^{\text{주2)}} \times \text{Min} \left(1, \frac{6\text{억원}}{\text{총대출한도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text{주3)}}} \right)^{\text{주4)}}$									
구분	초기보증료 계산방법									
신규보증시	$\text{담보주택가격}^{\text{주1)}} \times 1.5\%^{\text{주2)}} \times \text{Min} \left(1, \frac{6\text{억원}}{\text{총대출한도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text{주3)}}} \right)^{\text{주4)}}$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2] 담보주택변경(이사·재건축·멸실) 시 주택의 가격평가 및 담보가치변동금액 계산방법	[별표2] 담보주택변경(이사·재건축·멸실) 시 주택의 가격평가 및 담보가치변동금액 계산방법													
1. 최초(n=1) 담보주택변경인 경우 2. 2회차 이상(n≥2) 담보주택변경인 경우	1. 최초(n=1) 담보주택변경인 경우 2. 2회차 이상(n≥2) 담보주택변경인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계산방법</th></tr> </thead> <tbody> <tr> <td>④ 차액이 0보다 큰 경우 (담보가치의 증가)</td><td>(1) 담보가치변동금액^{주6)}</td><td> 차액 중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를 넘을 수 없음) $= \text{Min}\{\text{③차액,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text{주3}}$ $- (\text{보증신청일 담보 가치인정금액}^{\text{주1}} + 1 \text{ 회 차 부 터 } (n-1) \text{ 회 차 까 지 의 } \text{④.(1) 및 ⑤.(1)의 합계}^{\text{주10}})\}$ </td></tr> </tbody> </table>	구분		계산방법	④ 차액이 0보다 큰 경우 (담보가치의 증가)	(1) 담보가치변동금액 ^{주6)}	차액 중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를 넘을 수 없음) $= \text{Min}\{\text{③차액,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text{주3}}$ $- (\text{보증신청일 담보 가치인정금액}^{\text{주1}} + 1 \text{ 회 차 부 터 } (n-1) \text{ 회 차 까 지 의 } \text{④.(1) 및 ⑤.(1)의 합계}^{\text{주1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th>계산방법</th></tr> </thead> <tbody> <tr> <td>④ 차액이 0보다 큰 경우 (담보가치의 증가)</td><td>(1) 담보가치변동금액^{주6)}</td><td> 차액 중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를 넘을 수 없음) $= \text{Min}\{\text{③차액,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text{주3}}$ $- (\text{보증신청일 담보 가치인정금액}^{\text{주1}} + 1 \text{ 회 차 부 터 } (n-1) \text{ 회 차 까 지 의 } \text{④.(1) 및 ⑤.(1)의 합계}^{\text{주10}})\}$ </td></tr> </tbody> </table>	구분		계산방법	④ 차액이 0보다 큰 경우 (담보가치의 증가)	(1) 담보가치변동금액 ^{주6)}	차액 중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를 넘을 수 없음) $= \text{Min}\{\text{③차액,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text{주3}}$ $- (\text{보증신청일 담보 가치인정금액}^{\text{주1}} + 1 \text{ 회 차 부 터 } (n-1) \text{ 회 차 까 지 의 } \text{④.(1) 및 ⑤.(1)의 합계}^{\text{주10}})\}$	
구분		계산방법												
④ 차액이 0보다 큰 경우 (담보가치의 증가)	(1) 담보가치변동금액 ^{주6)}	차액 중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를 넘을 수 없음) $= \text{Min}\{\text{③차액,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text{주3}}$ $- (\text{보증신청일 담보 가치인정금액}^{\text{주1}} + 1 \text{ 회 차 부 터 } (n-1) \text{ 회 차 까 지 의 } \text{④.(1) 및 ⑤.(1)의 합계}^{\text{주10}})\}$												
구분		계산방법												
④ 차액이 0보다 큰 경우 (담보가치의 증가)	(1) 담보가치변동금액 ^{주6)}	차액 중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를 넘을 수 없음) $= \text{Min}\{\text{③차액, 조건 변경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인정한도}^{\text{주3}}$ $- (\text{보증신청일 담보 가치인정금액}^{\text{주1}} + 1 \text{ 회 차 부 터 } (n-1) \text{ 회 차 까 지 의 } \text{④.(1) 및 ⑤.(1)의 합계}^{\text{주10}})\}$												
주1) ~ 주5) (생략) 주6) [별표3]의 담보주택변경에 따라 변동하는 월지급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u>우대지급방식과 우대 혼합방식인 경우</u> 또는 “담보가치변동금액”이 1백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1백만원)에는 0원으로 적용 주7) ~ 주11) (생략)	주1) ~ 주5) (현행과 같음) 주6) [별표3]의 담보주택변경에 따라 변동하는 월지급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u>우대지급방식, 우대 혼합 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인 경우</u> 또는 “담보가치변동금액”이 1백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1백만원)에는 0원으로 적용 주7) ~ 주11) (현행과 같음)													

※ 각 조항의 세부적인 자구, 표현방식 등은 원안심사 등 내부 개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